

##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학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계열입학학생의 학과진입)** ①2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된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계열에 설치된 학과 중 하나의 학과에 진입하게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학과진입 대상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지망학과별로 순위를 정하여 학과진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학과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시간제등록생)** ①시간제등록생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허용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시간제등록생이 될 수 없다.

**제3조의2(시간제등록생의 학점취득 등)** ①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절차 및 수업운영, 등록금반환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에게는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30학점이상, 전공과목 45학점이상, 총 85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시 요구되는 140학점 이상(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칙」 제52조에서 정한 학점은행제에 따른 본교 학사학위 수여가능 전공을 이수한 자

**제3조의4(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절차)**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학사학위신청서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서를 본교 학위수여예정일 1개월 전 소정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3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한다.

③총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군위탁 편입학생)** ①군위탁 편입학생(“군위탁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군위탁생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으로 편입학하며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③군위탁생의 편입학 시기, 학점인정,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 등은 일반편입학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5조(모집단위간 이동)** ①모집단위간 이동(이하 “전과”라 한다)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대학의 공통핵심역량인 ‘성균핵심역량’에 따라 편성하며, ‘성균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통역량
2. 인문역량
3. 학문역량
4. 글로벌역량
5. 창의역량
6. 리더역량
7. 소프트웨어역량

**제6조의2(교과목의 구분)** ①교과목은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1.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은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성균인성 과목, 성균핵심역량의 기본이 되는 소통·창의·소프트웨어·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중점교양 과목, 인간·사회·자연에 대한 균형잡힌 안목을 함양하는 균형교양 과목, 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분야별 기초학업 과목들로 구성되며, 그 교육적 학문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성균인성영역		인성	
		리더십	
교양영역	중점교양영역	의사소통	
		창의와소프트웨어	창의와사유
			소프트웨어기초
		글로벌	기본영어
	전문영어 글로벌문화		
	균형교양영역	인간/문화의이해	
사회/역사의이해			
자연/과학/기술의이해			
기초영역		기초인문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2. 전공과목은 전공분야의 전문학술적 이론을 탐구 학습하는 과목과 이의 검증 및 체득을 위한 실험·실습·실기 과목들로 구성되며, 전자는 그 교육적·학문적 수준에 따라 전공핵심 과목과 전공일반 과목으로 구분된다.

3. 선택과목은 자격증 취득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수하는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군사학과목과 교양, 전공에 속하지 않은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제7조(성균인성·교양·기초학점의 이수)** ①성균인성·교양·기초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지정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의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이상을 해당 영역의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을 이수하는 자가 기초인문사회과학영역의 ‘교육학입문’을 이수할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②「학칙」제43조에 의한 편입학자, 제25조 3항의 모집단위 이동 학생 및 제20조에 의한 외국인 입학생의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전공학점의 이수)** ①전공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핵심과목과 전공일반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각각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복수전공자에게 지정된 전공핵심과목, 전공일반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각각 최소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선택학점의 이수)** ①선택학점은 학과별 수료학점에서 교육과정표에 따라 이수한 성균인성·교양·기초

학점과 전공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선택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
2. 선택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단,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은 제외)

**제9조의2(국제어수업 학점 이수)** ①「학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 6학점 이상, 전공 영역 12학점 이상의 국제어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과 전공 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하고, 편입학자는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공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편입학자의 인정학점)**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한다.

②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삭제)**

**제17조(특별학점 취득)** ①우수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목에 대해 ‘학점 취득특별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취득대상 과목은 학부대학장이 따로 정하며, 해당과목의 학점은 1학년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6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대학원교과목 수강)** ①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6학점(전문대학원 학술연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학생은 9학점)까지 대학원 석박공통과목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인정한다.

1.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일반)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 학사학위 취득 직후학기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②대학원교과목 중 학석공통과목은 수강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고, 학점 취득시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일반)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학사과정 학생이 취득한 대학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대학원개설과목임을 표기한다.

**제18조의2(학석사연계과정)** ①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학석사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 학과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서 진학 희망 대학원 소속 학장이 선발한다.

③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④삭제

**제1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소속 학장의 지도를 받아 단말기를 통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편입학생·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③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업과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한다.

④「학칙」 제20조에 의해 학과로 입학한 외국인 중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0조 삭제

**제21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및 추가)**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초 소정기간(통상 개강 후 1주차)내에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변경, 추가하여야 한다. 위 기간 경과 후 폐반·분반·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의2(수강철회)** ①수강 중인 과목을 학기 중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소정기간(통상 개강 후 4주차) 내에 2과목까지 학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다.

②수강철회 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시한다.

**제22조(교과목의 재수강)** ①기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F인 과목은 최초 수강후 4학기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며, 학기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취득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다만, 재수강 성적이 과락(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③재수강으로 기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9조에 정한 수료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F등급일 경우에는 재수강 가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성적평가)** ①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sup>+</sup>·A)은 30퍼센트 이내이며, A등급(A<sup>+</sup>·A)과 B등급(B<sup>+</sup>·B)의 합은 65퍼센트 이내로 한다. 그러나 전공일반과목의 경우는 A등급은 4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생과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은 이 수강인원과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 대학장이 인정하는 국제어수업 과목, 교직과목, 군사학, 실험실습과목, 실기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약학대학·의과대학의 전공과목, 군위탁생과목, 수준별 교육에 의한 고급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개설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이 경우에도 A등급은 5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90퍼센트 이내로 함)

2. 교육실습·현장실습 교과목과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학습 교과목

3. Flipped Class 운영 강좌

③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성적의 공시 등)**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중간고사 및 학기말시험 후 소정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출석부는 3년간, 과제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10년간 교과목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학장이 이를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삭 제
3. 삭 제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주어진 성적(교육실습성적은 제외)
6. 삭 제
7. 삭 제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성적의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2.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시험 부정행위로 4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③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개설 주관 학장에게 성적 정정을 청원하여 허가된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성적정정을 허가한 과목개설 주관 학장은 그 사실을 학생소속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학점포기)** ①7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이 학수번호의 변경, 교과목의 폐지, 기타 사유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학점포기는 학기초 소정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학 중 통산 2과목까지 할 수 있다.

③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해당 성적을 삭제하여 'W'로 표시하고, 제16조 수업연한의 최종 학년 진급시 삭제하며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6조(성적 평점평균의 산출)** 성적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학칙」 제39조제1항 및 이 세칙 제42조와 제43조에 규정한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평점합계를 취득학점합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

**제27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단, 당 학기 신입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에 한함.

②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선이내로 한다.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의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개강일로부터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통

③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④등록금분할납부자는 제27조 제1항 또는 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하여 휴학을 하여야 할 경우 미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할 수 있다.

**제28조(입대휴학)** ①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입대휴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연장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다.

**제28조의2(임신·출산·육아휴학)** ①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진단서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4분의 3선이내로 한다.

②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다.

③임신·출산·육아휴학은 재학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의3(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사전심사 결과,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창업휴학은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①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하는 재학생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입대휴학자 인정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입대휴학자 인정학점을 신청한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3조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입대휴학자의 복학)** ①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기간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③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휴학 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32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제27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31조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제적처리하며, 해당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제적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33조(재입학 허용범위 및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사경고 제적자, 「학칙」 제61조에 의한 징계제적자 및 제적 후 10년 이상 경과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재입학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③학장은 학생지도상 필요한 경우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의한 학년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재입학 심사)** ①재입학 심사는 소속 학장과 학장이 위촉한 2인의 전임교원이 이를 행한다.

②재입학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35조(재입학의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휴학 만기 제적자 및 「학칙」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급)** ①유급은 학년 단위로 한다. 단, 「학칙」 제5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유급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②「학칙」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유급원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7조(복수전공 신청절차 등)** ①「학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수전공이수(변경)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복수전공 이수(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복수전공 이수학점)** ①복수전공 이수자의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이수는 제1전공 학과의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이수에 따른다.

②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③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소속 학과와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소속 학과의 전공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전공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④복수전공 이수 신청 전에 선택학점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복수전공의 제한)** ①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을 복수전공 할 수 없으며, 사범대학 각 학과는 사범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할 수 있다.

②<삭제>

③복수전공 희망자가 특정 전공에 집중될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리더학부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계절수업)** ①계절수업(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를 포함한다)은 매학기 종강 후 방학동안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절수업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각 계절수업 당 6학점 이내, 연간 총 9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프로그램의 경우 각 계절수업당 수강학점 또는 연간 총수강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 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은 폐반한다.

⑤계절수업의 취득성적은 졸업·전공배정·복수전공배정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전과·학사경고·유급·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⑥계절수업의 성적평가는 이 세칙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40조의2(집중과정)** ①대학 또는 학과(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름방학 기간 중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③집중과정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며, 집중과정의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각각 해당 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으로 한다.

④집중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1조(삭제)**

**제42조(졸업성적)** 「학칙」 제39조 및 제40조의 졸업에 필요한 성적 평점평균은 2.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체육특기자 및 외국인학생(국적기준)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제43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초(제6학기 초 또는 제7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기졸업신청 자격은 제5학기 또는 제6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신청 자격은 3.50이상으로 한다.

③조기졸업신청자로서 「학칙」 제40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성적 총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인정은 「학칙」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적총점평균평점이 3.50이상인 자 가운데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이상 취득한 자
2. 대학원 제1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자

**제44조(졸업평가)** ①졸업평가는 연구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종합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②졸업평가 유형, 평가시기,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유효기간 등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졸업평가에 불합격하고 다른 졸업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졸업평가에 다시 응하여 합격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 시기는 합격학기 졸업일로 한다.

**제45조(3품인증)** ①「학칙」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3품은 다음과 같다.

1. 인성품
2. 국제품
3. 창의품

② 삭제

③3품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졸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3품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시기는 3품인증 취득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3품인증의 각 분야별 취득기준, 적용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 **제46조 삭제**

#### **제47조 삭제**

**제48조(학적부 기재사항)**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첨부)을 재적생은 학장에게, 졸업생 및 제적생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49조(제증명 발급)** ①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국문)
8. 3품인증증명서(국문)
9. 기타 증명서

②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유학생 체류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증명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50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도신설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제45조의 한국어시험은 1996학년도이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세칙 시행과 동시에 “시간제학생등록시행에관한내규”와 “군위탁편입생에관한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1.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개정세칙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이전에 입대휴학 한 학생이 제대 후 복학할 경우에는 2002학년도까지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2. 1999학년도이전 입학자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 세칙에 따라 부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제35조의 개정세칙은 2000학년도 제1학기 제적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0학년도이전 입학자는 별도로 정한 교육과정 이수 지침을 적용한다.
2. 제42조,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0학년도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 인문과학계열 및 사회과학계열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3조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 이전에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위를 본교에서 수여 받을 목적으로 학습을 시작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학부내규가 제정된 학부에 대하여는 이 세칙 제23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7조, 제42조 및 제49조의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교과목의 재수강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2004학년도 이전 취득한 교과목은 매학기 2과목 이내에서 학부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학점포기원을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점포기가 허가된 과목은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성적증명서에는 'W'로 표시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학점포기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2004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7학기부터는 2004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과 2005년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2과목 이내(2005년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포기는 재학중 통산 2과목 이내)에서 포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3조의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2조의 F등급과목 재수강 적용은 2012년 1학기 이후에 수강하여 받은 F등급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7조 2항의 개정세칙은 2012학년도 이전 학사 편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9조 제4항의 개정 세칙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전공영역 국제어수업 의무학점 12학점 이상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